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26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김 현 · 박해철 · 최민희
진성준 · 이주희 · 손명수
김 윤 · 이재강 · 김우영
박지혜 · 홍기원 · 이광희
박 정 · 박용갑 · 박선원
최혁진 · 조인철 · 황정아
이정헌 · 황명선 · 임미애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구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클라우드 사진 · 메신저 · SNS 등 일상 서비스가 ‘소유’ 중심에서 ‘접속(정기결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생활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기록 · 연락처 · 콘텐츠 접근권 등이 계정에 축적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할 경우 병원 이송, 장례 절차 등 과정에서 피해사망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 · 저장된 이용정보의 확인 및 승계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가 국민 대다수의 일상과 밀접

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유가족·친지가 피해사망자를 추모하거나 사후 정리를 위해 이용정보의 승계를 희망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의 승계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유가족·친지가 피해사망자의 이용정보를 필요로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기준에 따라 한시적·제한적으로만 접근 및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음. 이마저도 제공자가 거부할 여지가 있어 피해사망자를 대리할 법적 자격을 충분히 갖춘 유가족·친지에게도 이용정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정보가 유실될 우려가 있음. 동시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모든 이용정보를 일률적으로 승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 전에 미리 지정한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저장된 이용정보 중 연락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 등 일부 이용정보에 한하여 유가족·친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4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7(디지털유산승계인의 지정 및 열람·복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사망 후 디지털유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망 전에 특정인(이하 “디지털유산승계인”이라 한다)에게 열람·복사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지털유산승계인은 이용자가 지정한 사실을 전자적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사전에 승인하여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출액, 이용자 수(가입자 수), 이용량(트래픽) 등 서비스의 규모 및 영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저장한 연락처 목록(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중 이용자가 사망 전 승계 대상으로 별도로 지정한 항목
2.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가 그 설정에 따라 일반에 공개한 정보(이용자의 공개 게시물, 공개 프로필 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의 정보로 한정한다)

② 디지털유산승계인은 이용자의 사망 사실이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등 공적 서류로 확인된 날(이하 “사망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유산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인확인 및 증빙 절차를 거쳐, 사망 확인일로부터 3년간 디지털유산승계인이 제1항 각 호의 디지털유산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1. 디지털유산은 열람·복사 목적의 제공으로 한정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지위 또는 계정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2. 디지털유산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부분을 삭제·가림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호조치가 곤란한 경우 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3. 연락처 목록의 경우 일괄 다운로드 등 외부 반출을 제한하거나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디지털유산승계인이 사망 확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디지털유산승계인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이용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디지털유산승계인, 대상 디지털유산의 범위 또는 열람·복사 권한의 부여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디지털유산승계인 또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 디지털유산승계인의 지정·변경·철회 방법 및 절차, 디지털유산의 제공 범위와 제한사항, 사망 확인 및 신청 절차 등을 고지하고, 이용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지정·변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디지털유산승계인의 지정·승인 및 철회 절차, 사망 확인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본인확인 방법, 디지털유산의 제공 범위, 제공 방식, 제3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분쟁 발생 시 제공의 보류 또는 제한의 사유와 기준 및 그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지털유산승계인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이용자에게 제44조의27의 개정규정에 따른 디지털유산승계인 지정 제도, 지정 가능한 디지털유산의 범위, 지정·변경·철회 방법, 사망 확인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전자적 방법 등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이후 이 법 시행 당시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 최초로 로그인하거나 이용계약을 갱신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디지털유산승계인의 지정 또는 미지정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선택 결과(지정 또는 미지정 여부 및 지정 내용)를 전자적 기록(처리로그·접속기록 등) 또는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지털유산승계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 로그인하거나 이용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정 기회 제공 및 기록·보존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이용자가 이후에 최초로 로그인하거나 이용계약을 갱신하는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지의 방법, 전자적 기록의 요건, 기록·보존의 범위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44조의27(디지털유산승계인의 지정 및 열람·봉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사망 후 디지털유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망 전에 특정인(이하 “디지털유산승계인”이라 한다)에게 열람·복사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지털유산승계인은 이용자가 지정한 사실을 전자적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사전에 승인하여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출액, 이용자수(가입자 수), 이용량(트래픽) 등 서비스의 규모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저장한 연락처 목록(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중 이용자가 사망 전 승계 대상으로 별도로 지정한 항목

2.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가 그 설정에 따라 일반에 공개한 정보(이용자의 공개 게시물, 공개 프로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정보로 한정한다)

② 디지털유산승계인은 이용자의 사망 사실이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등 공적 서류로 확인된 날(이하 “사망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유산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인확인 및 증빙 절차를 거쳐, 사망 확인일로부터 3년간 디지털유산승계인이 제1항 각 호의 디지털유산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1. 디지털유산은 열람·복사 목적의 제공으로 한정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지위 또는 계정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2. 디지털유산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부분을 삭제·가림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호조치가 곤란한 경우 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3. 연락처 목록의 경우 일괄 다운로드 등 외부 반출을 제한하거나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디지털유산승계인이 사망 확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디지털유산승계인에 대하

여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이용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디지털유산승계인, 대상 디지털유산의 범위 또는 열람·복사 권한의 부여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디지털유산승계인 또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 디지털유산승계인의 지정·변경·철회 방법 및 절차, 디지털유산의 제공 범위와 제한사항, 사망 확인 및 신청 절차 등을 고지하고, 이용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지정·변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디지털유산승계인의 지정·승인 및 철회 절차, 사망 확인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본인확인 방법, 디지털유산의 제공 범위, 제공 방식, 제3자 개

	<u>인정보 보호조치, 분쟁 발생 시 제공의 보류 또는 제한의 사유와 기준 및 그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u>
--	--